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수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51
----------	-------

발의연월일 : 2023. 3. 20.

발의자 : 김수홍 · 강득구 · 김남국  
김성주 · 노웅래 · 박광온  
신정훈 · 안규백 · 이형석  
윤준병 · 전용기 · 전해철  
정필모 · 최혜영 · 홍성국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망의 건설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을 반영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역량을 증진하려는 국가의 기본정책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망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불균형을 해

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다음 각 호의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종합계획은 「<u>국토기본법</u>」  <u>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u> 「<u>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u>」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③ ~ ⑦ (생략)</p>	<p>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u>다음 각 호의 계획</u>-----.</p> <p>1. 「<u>국토기본법</u>」 제6조제2항  <u>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u></p> <p>2. 「<u>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u>」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p> <p>3. 「<u>국가균형발전 특별법</u>」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p> <p>③ ~ ⑦ (현행과 같음)</p>